

大田直轄市山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

議案 番 號	327
-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'93. 10.

提 出 者：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山城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目的으로 制定한 山城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條例는 同 地區에 대한 事業이 '92.12.31 換地確定處分됨으로 서 事業이 完了되어 廢止함

2. 參考事項

- 事 業 名：山城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
- 位 置：中區 山城, 文化洞일원
- 面 積：738천m²
- 施行期間：'85. 4. 16 ~ '92. 12. 31
- 施 行 者：大田直轄市長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대전직할시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

● 대전직할시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[1985. 9. 1]
조례 제 1456호

개정 1987. 3. 20 조례 제1549호

- 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토지 구획정리사업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 산성동, 문화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(이하“구획정리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시행지구 및 면적) 이 사업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하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대전직할시 중구 산성동, 문화동 일부토지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 3 조 (사업의 범위)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, 분합, 지적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 조성사업과 기타 부대 사업으로 한다.
- 제 4 조 (비용의 부담)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, 지적, 토질수리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로서 부과한다.
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75조의 규정의 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
- 제 5 조 (환지면적의 기준)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 토지 각필의 면적은,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입야대장(이하“지적공부”라 한다)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한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.
1. 공고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 발생한날 현재 공부상의 지적
 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
- 제 6 조 (정리사업 전후의 평가) ① 정리사업 전후 토지 각필의 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 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. 다만, 정리전 공공의用に 공한 토지로서 정리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지로 사용되는

토지는 평가 가격을 부하지 아니한다.

② 정리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전문가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.

제 7 조 (공공용지 부담) ① 공공용지로서 토지 각필이 부담 하여야 할 면적은 종전 토지면적 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 폭원등을 기준으로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한다.

② 환지계획시 신설공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계획도로 부담율에 준하여 분담한다.

제 8 조 (환지계획) ① 본 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등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 할 토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와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 할수 있다.

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할수 없을때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수 있다.

④ 정리후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用に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와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보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환지면적보다 증환지한 면적은 제6조에 의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.

⑥ 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 공도가 책정되는 토지는 연도 부담율 2분의1로 감 할 수 있다.

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 기간내에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.

제 9 조 (특별지 환지) ①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에 저촉되면 비환지 할 수 있다.

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

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환지처분)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환지처분에 대한 청산) ①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권리금액이라함은 권리면적에 종전 위치에서 정리사업 후 토지 평정 가격의 단가를 승한 금액을 말한다.

③ 제1항의 권리면적이라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.

제 12 조 (토지의 관리)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3 조 (체미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처분) 사업비에 충당될 체미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 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4조 (납부서 통지)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넘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자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준한다.

제 15 조 (환지 예정지의 사용)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(이하“토지 소유자”라 한다)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(“별지 제1호서식”)를 받아야 한다.

제 16 조 (대리인 선정신고)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시내 거주하지 않는 자는 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와 대리행위할자를 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신고(별지 제3호 서식)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부동산 등기신고) 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 처분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한때에는 소유권이전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법인신고)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주소 성명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또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.

제19조 (신고의무 불 이행시의 보상한계)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소유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도 할 수 없다.

제20조 (증명)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1조 (등기완료의 통지)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축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22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조례 제1456, 154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大田直轄市山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

審 查 報 告

1993. 12. 5
産業建設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 : 1993. 11. 8. 大田直轄市長
- 나. 回 附 日 字 : 1993. 11. 13
- 다. 上 程 日 字 : 第28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
第8次 産業建設委員會 (1993. 12. 15) 上程
質疑, 審査, 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都市計劃局長 李 秉 讚)

가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山城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目的으로 制定한 山城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條例는 同 地區에 對한 事業이 '92. 12. 31. 換地確定處分되므로써 事業이 完了되어 廢止함.

나. 參考事項

- 事 業 名 : 山城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
- 位 置 : 中區 山城, 文化洞 일원
- 面 積 : 738千m²
- 施行期間 : '85. 4. 16 ~ '92. 12. 31
- 施 行 者 : 大田直轄市長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金 完 圭)

가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: 앞의 內容과 같음.

나. 檢討意見

- 山城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條例는 中區 山城洞, 文化洞 一圓의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 할 目的으로 1985. 9. 1 制定하였음.
- 當該 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이 1992. 12. 31. 換地 確定 處分 하여事業이 完了되어 本 條例를 廢止코자 하는 事案으로 原 案대고 議決함이 加할 것으로 思料됨.
- 全般的으로 地區別 土域區劃整理 事業이 終了된 後 地區內 殘 餘地, 替費地 賣却등의 業務는 1969.6.25. 制定된 大田直轄市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條例에 依據 土地의 使用 管理및 處分 에 愼重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없 음

5. 討論要旨

없 음

6. 小委員會 審查內容

없 음

7. 少數 意見의 要旨

없 음

8. 審 查 結 果

原 案 可 決

9. 其他 必要한 事項

없 음